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4373호(號) 1941(小和 16)년 8월 20일

○ 회 보(彙報)

○ 토 목(土木)

● 조선공유수면매립령(朝鮮公有水面埋立令)에 의거한 처분사항(處分事項)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[左]와 같다.

매립계획(埋立計劃) 변경 허가(變更許可)

변경허가 연월일(年月日)	매립 장소 (埋立場所)	수면의 종류	목적(目的)	계획변경의 개요	면허를 받는 자(者)의 주소와 이름	비고(備考)
1941(昭和 16) 년 8월 12일	경상남도 부산부 범일 정(慶尙南道 釜山府 凡 一町) 앞 매립면허구역(埋立免許 區域) 중 제 1호지(地) 의 2	바다[海]	공장부지(工 場敷地) 및 시가지(市街 地) 조성	구거(溝渠) ¹⁾ 및 운하 (運河)의 너비를 줄여 매립면적을 122,750· 46평(坪)으로 변경	부산부 범일정 311번지 부산진매축주식회 사(釜山鎭埋築株式 會社)	1925(大正 14) 년 8월 12일 토 (土) 제248호 면허분(免許分)

●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(朝鮮公有水面取締規則)에 의거한 처분사항(處分事項)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[左]와 같다.

국유하역장(國有荷役長) 개축허가(改築許可)

허가연월일	개소(箇所) ²⁾	공작물(工作物) 개요(概要)	저수기간(著手期 間)	준공기간(竣工期間)	피허가인(被許可人) 주소·성명
1941(昭和 16)년 8월 13일	경상남도 부산부 소화통4정목 34 번지(慶尙南道 釜 山府 昭神通 四丁 目 三四番地) 앞	선예양장(船曳揚 場) ³⁾ 연장(延長) 5미 터, 폭(幅) 5미터 14.	허가한 날에서 1 월(月) 내	허가한 날에서 2월(月) 내	부산부(釜山府)

1) 역자 :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·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(流水)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한다.

2) 역자 : 개소는 물건이 있는 곳 또는 장소를 가리킴.

3) 역자 : 선예양장은 배를 태고 하역하는 장소를 말함.